

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23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8. 14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『지방재정법』 제9조제3항에 따라 설치·운영 중인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.12.31.자로 만료될 예정으로, 지속적인 특별회계의 운영·관리를 위하여 그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.
- 『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』 제49조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대해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.

주요내용

-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변경(안 제29조의2)

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3. 5. 18. ~ 2023. 6. 7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[붙임 1]

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2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 을 “2028년 12월 31일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철도교통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철도교통과장 이 익 환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교통정책팀장 백 대 현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임 거 목 (행정 2975)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9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 12월 31일</u> 까지로 한다.	제29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---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.